

CEO안심 상해보험II (무배당) (25.01)

★ KB 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그린 <GREEN 지구 캠페인>

KB손해보험과 고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 종이약관 대신 모바일약관으로 시작하세요.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감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 KB손해보험에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KB손해보험은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건실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고객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께서 믿고 찾으시는 최고의 보험회사가 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약관 이용 가이드북 / 요약서	
약관 이용 가이드북	5
약관 요약서 I. 보험계약의 개요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10 10
공통사항	
보험약관 이해하기	22 25 30 35 37 42 59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제2조(용어의 정의)(67 67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71 72 72

세8소(보험금의 정구)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74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	75
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77
제12조(주소변경통지)	78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78
제14조(대표자의 지정)	79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83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85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86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	87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89
제22조(계약의 무효)	91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92
제24조(보험나이 등)	94
제25조(계약의 소멸)	95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96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97
제28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97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	98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
력회복))	99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	활
(효력회복))	100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희)
	102
제32조의1(위법계약의 해지)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103
제34조(히사의 파산서고와 해지)	

	제35조(해약환급금)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37조(중도인출) 제38조(배당금의 지급)	
X	제7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제39조(적용대상)	105 105 106 106
开	### #################################	106 107 107 107 108 108 110 110
Ţ	세2절 1종(0E0플랜(금리고정형)) 보장 2-1.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20~100%) ······	111
X	#13절 2종(실속플랜(금리연동형)) 보장 3-1. 일반상해사망	116 118
X	내4절 3종(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 보장 4-1.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 ·· 4-2.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 	l형) 125 l형)
	4-4 익바산채흐요장채(20~70%)	

4-5. 상	해수술비 ·····	132
2. 보험 가. <i>2</i> 3. 장애(별약관 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문 자동납입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 민전용보험전환 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환급금 제도 14	136 137 8
별표 【별표1】2 【별표2】5	장해분류표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147 186
[법규1] [법규2] [법규3] [법규4] [법규5] [법규6] [법규7] [법규8] [법규9] [법규10] [법규11]	218된 법•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192 194 202 203 204 208 215 220 221 221
보장색이 .		223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 Guide Book



※ 同 Guide Book은 보험약관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주요내용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보험약과이라?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 약**의 <mark>중요사항</mark>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mark>반드시 확인</mark>하셔야합니다.

2.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약관 이용 가이드북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 요약한 약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통약관: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특별약관: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하여 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용어해설 및 색인 등

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보험용어의 해설**, 가나다 順 **보 장색인, 관련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3.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 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4.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보통약관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mark>쪽수 및 영상자료</mark>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 •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본인이 가입한 보장을 확인하여 가입보장별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P71 P72	■
❷ 청약 철회 제20조(청약의 철회)	P87	□
❸ 계약 취소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P89	교사교 (명상자료
4 계약 무효 제22조(계약의 무효)	P91	■ 以 ■ ■ 나 영상자료
⑤ 계약 前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P79 P83	민 . 1 명상자료
⑤ 계약 後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P80 P83	(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
② 보험료 연체 및 해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P98	의 경기 의 경기 영상자료
③ 부활(효력회복)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P99	의 10 명상자료
해약환급금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35조(해약환급금)	P102 P103	미 1 명 명상자료
⑥ 보험계약대출 제36조(보험계약대출)	P104	교 (1 명상자료

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mark>7가지 꿀팁</mark>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mark>쉽고 편리하게</mark>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 요약서 P9
- 2 '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 핵심 체크항목 P7
- '**가나다 順 보장 색인(索引)**'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 보장 색인 P223
-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해설, 약관본문 Box안 예시**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 용어 해설 P22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 QR코드 P6
- 6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P188
- 7 약관조항 등이 **음영 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kbinsure.co.kr), 고객 콜센터 (1544-0116)로 문의 가능
-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 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FINE,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이 요약서는 그림 • 도표 • 아이콘 • 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同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 보험상품명: CEO안심상해보험 II (무배당)(25.01)

■ 보험상품의 종목 : 상해보험

01. 상품의 주요 특징

이 상품은 상해관련 위험을 보장합니다.

종구분	1종	2, 3, 4종
상품형태	금리고정형	금리연동형

02. '상품명' 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CEO안심상해보험 II (무배당)(25.01)

- **1**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 상해보험**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보장성보험 [사망, 상해 등]

예금자보호

11.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보험에는 <mark>보장한도</mark> 등 <mark>보험금 지급제한 조건</mark>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mark>보험금 지급 한도</mark>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보장한도 적용 담보

보장한도

^{최초} 1회한 보장한도

180일 한도

담보명	보장한도
일반상해사망	1회한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최초 1회한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최초 1회한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1회한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최초 1회한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최초 1회한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1회한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최초 1회한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최초 1회한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0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mark>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mark> 보험회사는 <mark>해약환</mark> 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외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03.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① 보장성보험







보<mark>장성보험</mark>

- ① 이 보험은 <u>상해</u> 보장을 주목적으로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 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② 금리연동형 보험



[2종(실속플랜(금리연동형)), 3종(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 4종(안심운전플랜(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 [적용금리 변동]

최저 <mark>이율보장</mark> 전기간: 0.2%

-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변동됩니다.
- ② 동 이율은 납입한 적립보험료에서 계약 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
- ③ 이 보험의 <mark>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mark> 입니다
 -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 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 이율

③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주의



예금자보호

-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 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②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 각 1인당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통약관 제20조

보험계약자는 <mark>보험증권</mark>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 계약의 <mark>청약을 철회</mark>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mark>초과</mark>한 경우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통약관 제21조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mark>3개월</mark>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03. 보험계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2조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하 보험료를 독려드립니다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
 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지정)로 한 경우
-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04. 보험계약前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통약관 제15조, 제17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mark>청약</mark> 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 <mark>해지</mark> 가능 (회사)

보장 <mark>제한</mark> 가능 (회사)



-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mark>말로써</mark> 알 렸을 경우 보험계약前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 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민원 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 지식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 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05. 보험계약後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통약관 제16조, 제17조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mark>직업 • 직무 변경 등이 발생</mark> 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 • 직무 변경 등으로

- ① <mark>위험이 감소</mark>한 경우 <mark>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mark> 하여 드리며.
- ②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업•직무 변경







위험 증가 보험료 증액,

운전목적 변경





회사에 알린 경우

위험 감소

정산금액 추가납입

보험료 감액, 정산금액 환급

운전여부 변경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위험이 증가한 만큼, 보험금 과소 지급 가능

이륜차 등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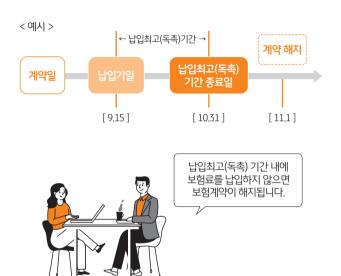


0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통약관 제29조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 **납입연체**: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07.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통약관 제30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mark>해약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mark>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 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 부를 결정하며, <mark>부활(효력회복</mark>)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08. 보험계약대출

보통약관 제3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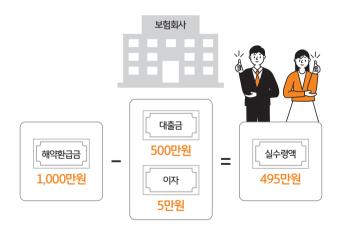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 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는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① <mark>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mark> 및 <mark>이자</mark>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mark>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mark>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 예시 >

환급금 내역서				
利のはいココ		공제금액		시스템에
해약환급금 원금 이자 계				
1,000만원	500만원	5만원	505만원	495만원



09.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보통약관 제8조, 제9조

상해•질병사고의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물·배상책임사고는 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 문의 (서류 안내)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보험금 지급 심사 (필요시 손해사정 또는 조사)
 보험금 지급 (심사결과 안내)

>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3영업일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영업일)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u>	보험금 청구	거류		
구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	통원 확인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공통
사망	● (사망진단서)					
장해	● (장해진단서)					
진단	•				● (검사결과지 등)	청구서
입원	Δ	•				신분증
수술	Δ		•			
실손	Δ	● (입원시)	● (수술시)	● (통원시)		

주)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이해하기

■ 보험약관이라?

☞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계약자와 보험 회사의 권리·의무, 보험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내 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은 법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 ☞ 보험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마 련된 「표준약관(별표15)」을 준용하여 금융감 독원 감독하에 작성됩니다.

■ 본 약관의 구성

1. 보험 가이드

· 보험용어해설 · 자주 발생하는 민원

·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2. 고객 안내사항

-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
- · 고객정보 취급방침

3. 보험약관

- · 부통약관
- · 특별약관
- 별표

■ 기타 문의사항

- ☞ 당사 홈페이지(www.kbinsure.co.kr) 공시실에 상품요약서와 보험약관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내용이 궁금하거나 약관을 분실하셨을 경우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계약변경,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등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홈 페이지 MY KB, 방카슈랑스콜센터(1544-011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다음의 업무를 보실 수 있 습니다.

MY KB	계약조회, 고객정보 변경, 계약 변경, 계약해지/청약철회, 보험료 납입/지급, 증명서 발급 등
방카슈랑스 콜센터 1544-0116	계약관리, 사고접수, 보상, 각종 상담문의 등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 보장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 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 한 보험료
- ·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장개시일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만기환급금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 중 일정률의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 급하는 제도.

■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 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만기환급금 지급시기에 만 기환급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자동갱신제도

보험계약기간의 만료시점까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제도

약관내 의학용어 순화

용어	용어 순화
	전신성홍반성루푸스(피부, 관절,
홍반성루프	신장, 폐, 신경 등 전신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
갑상선	갑상샘(갑상선)
비골(鼻骨)	비골(코뼈)
하악골	하악골(아래턱뼈)
상악골	상악골(위턱뼈)
사지골	사지골(팔다리뼈)
건	건(힘줄)
흉막	흉막(가슴막)
음낭수종	음낭수종(물음낭증)

주요내용 요약서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취소

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의 무효

- 1. 신체 관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 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 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 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

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 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2. 재물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의 소멸

- 1. 신체 관련
 -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 터 효력이 없습니다.
- 2. 재물 관련(비례보상) 사고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의 80%를 넘을 때 그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 약은 소멸됩니다.
- 3. 재물 관련(실손보상) 사고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 은 소멸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 약은 해지됩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

계약일로부터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 중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약관에서 정한 횟수로 제한됩니다.

■ 계약 전·후 알릴 의무

- 1. 계약 전 알릴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 (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 합니다.)
- 2.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 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 습니다.

※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1. 신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 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 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 확 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 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은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 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 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 급합니다.

2. 배상책임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접수증 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 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급할 보험 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한 금 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3. 재산소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 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 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 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 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 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 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 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 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기 바랍 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2.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 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로 합니다. 단, 15세미만 피보험자인 경우는 부 활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 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 금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인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 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4.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 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 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갱신형 보장

- 회사는 갱신형보장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 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될 계약의 보험료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 서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갱신시에는 보험나이 증가,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및 의료 수가(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한함) 등의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장은 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보장이 종료되는 날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보장의 만 기일의 다음날 갱신 됩니다.
- 갱신형보장을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갱신형보장의 보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갱신계약 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갱신형보장의 보 험료를 계속 납입해야합니다.
- 갱신형보장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 하여 적용합니다.

■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 및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암 관련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 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 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 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 니다.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 보장에 서 제외됩니다.

■ 특정 질병 관련 보장

- 암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을 보험금 지급대상 으로 하므로, 관련 질병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수술 관련 보장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 (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 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 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 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재물손해,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 레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태아보험

-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 보험자로 합니다.
- 자녀(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출생아 각각을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 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자주 발생하는 민원

■ 해약환급금 관련

- 사례 : 홍길동 계약자는 계약 후 1년경과 후에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

- 해설 : 보험계약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되고 또 다른 일부는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금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 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 습니다.

■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변동 관련

- 사례 : 홍길동 계약자는 가입당시 만기환급률을 9%로 설계하였으나, 실제 만기시 환급율 이 88%로 감소됨에 따른 불만 제기

- 해설 : 적립부분 적용이율이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경우(금리연동형)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 립부분 계약자적립액을 적립하게 됩니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 지표금리 등에 연동되어 변동될 수 있으므 로,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부분 계약자 적립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 과소

- 사례 : 홍길동 계약자는 보험가입 후 5년이 경과 하여 중도인출을 일부 실시하였고, 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만기환급금을 수령하였 을 때 환급금이 적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해설 : 중도인출은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에서 인출하게 되는 금액으로 중도인출 받 은 금액만큼 차감한 후 적립됩니다. 따라 서 중도인출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경 우와 비교하여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 금)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관련

- 사례 : 홍길동 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직업을 변경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일반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은 것에 대해 불만 제기

- 해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러지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청구서류 제출 및 지급절차 안내

© 인터넷/모바일 접수: 앱스토어 KB손해보험 보험금 대표앱(홈페이지

> www.kbinsure.co.kr/모바일 m.kbinsure.co.kr)

- 5천만원 미만건만 접수 가능하며 PC, 모바일홈페이지 및 대표앱을 통해 접수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사망보험금 청구, 5천만원이상 청구 또는 보험금 타인 위임시 우편/방문을 통하여 원본 서류를 제 출해주셔야 합니다.
- ☞ 우편 접수: 04027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91(합정 동) KB손해보험 합정빌딩 19층 인보험 사고접수센터(우편접수만 가능)
 -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와 원본 구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방문접수: 가까운 고객센터(당사 홈페이지 조회 가능)
- ☞ 사고접수 완료시 접수번호 및 보상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휴대폰 문자매체(SMS, LMS, 카카오톡 알 림톡 등)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보험금청구 및 청구서류 접수 ↓ 심사 및 손해조사 ↓ 보험금결정 및 지급 ↓ 보험금 지급안내

■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 ☞ 고객님께서는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 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별도로 선임한 손해사 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 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시 비용주체

● 보험계약자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 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 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 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 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개인(신용)정보 처리 등에 관한 동의 안내

☞ 당사는 손해사정 및 사고장소,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요 청드리며,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또는 의료심 사 등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 연되거나 불가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 ☞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 작성 및 타사에 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면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단, 타 보험사에게 보험금 심사 단계에서 사고 조사 등의 사유로 접수대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하신 보험사에 각각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 ☞ 타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 협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nia.or.kr)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됩니다. (단, 2015.3.12. 이전 청구사유 발 생한 경우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및 의료심사

- ☞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500 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요 청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 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 상해/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 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 가 시행될 수 있으며, 장해급부 청구시 장해 상태에 대하여 장해재심사(재진단)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 및 지연지급 안내

- ☞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 상해·질병사고는 최종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지급사유 조사·확인 필요시 30영업일), 재물·배상책임사고는 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입니다.
- ☞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금 가지급 제도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의 금액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ㆍ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 어 접수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 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부지급 제도

-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청구 보험금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를 안내드립니다.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www.kbinsure.co.kr)에 접속하여 신청

/ 전화상담: 1544-0116

- 우편접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 험빌딩 소비자보호파트(재심사요청 접

수만 가능합니다.)

- 청구서류안내,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자사 홈페이지 (www.kbinsure.co.kr/m.kbinsure.co.kr) 또는 방카슈랑스콜센터 (☎ 1544-0116)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험금 청구시 안내되는 담당자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 조정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안내
-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방카슈랑스콜센터(☎1544-0116)로 문의하실 수 있 습니다.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 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 어야 합니다.
- ※ 2015.1.1.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 분류기호 기재)으로 대체가능합니다.

■ 교통사고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미성년자 성	-
공통서류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배우자, 자 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 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 계증명서 등) ·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보험금청 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권 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동 주민 센터
의료 비 및 가 보험 입원 성당	·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자사 자동차보험 처리시 생략가능)	해당 보험사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의료 자동 비 차 및 보험 입원 미처 일당 리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경찰서 · 진료 병원
사망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첨부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상속관계 확인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필요시) 추가서류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경찰서 진료 병원 · 동 민 센터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학 (종합) 병원
후유장해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성신부전: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사지절단: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인공관절 치환수술건: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비장, 신장적출 수술건: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진료 병원
자동차사 고 부상보장	· 사고증명서 1.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2.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등)	해당 보험사 · 경찰서 · 진료 병원

■ 상해사고

 구	부	구비서류	발급처
- - - -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포함 · 피보험자/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대 생략가능)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u></u> 번호
사고 증빙 서류	산재 사고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추가서류 - 직업급수/사고내용 확인시: 산재요양신청서 - 입원일당/의료비 청구시: 입퇴원확인서, 보험급여원부	근로 복지 공단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사고 증빙 서류	폭행 사고	·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경찰서
	군인 재해 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군병원
	의료 사고 등 법원 분쟁	· 법원판결문	법원
	기타 사고	·청구서 작성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병원초진차트	진료 병원
의료비	입원	· 진단서(단, 50만원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진료 병원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 의 비	통원	· 진료비계산서 (병원/약국 영수증) · 처방전(무료)(질병분류기호 기재)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10만원 이하의 청구건 중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카드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 필요 (진단서/통원(진료)확인서/소견 서/진료차트 등)	진료 병원
		· · · · · · · · · · · · · · · · · · ·	

■ 질병사고

구분	Ė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분 포함 · 피보험자/청구인의 신분증 사본(C 생략가능)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동 주민 센터
의료	입원	· 진단서(단, 50만원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진료 병원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구분 의료 통원	· 진료비계산서 (병원/약국 영수증) · 처방전(무료)(질병분류기호 기재)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10만원 이하의 청구건 중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카드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발급처 진료 병원
	- 1 5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암 상 패 암 등	· 암(상피내암 등)확진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 암수술급여금: 수술확인서	진료 병원
진단 금	2대 질병 치료 비 (뇌/ 심장	· 진단서 · 정밀검사결과지(특정질병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의)(예: CT, MRI, 심전도 등)	진료 병원
	특정 질병 수술 비	· 진단서 · 수술확인서	진료 병원
	기타 진단 금	· 진단서(약관내용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진료 병원
	l	단서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재된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첨부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경찰서 · 진료 병원 · 동 주민 센터
태아 보험	신생 아입 원비 저체 중아 육아 비용 유산 사산	· 입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시 해 명시/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	및 당기간 터

■ 치아보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피보험자/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미성년자 생략가능)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동 주민 센터
치료비	· 치아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진료확인서 - 진료된 치아위치(또는 치아번호) - 진료내용,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종료일, 진료일수 · 치료 전후 해당치아의 X-ray 사진(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진료비 계산서	진료 병원

■ 재물사고

구분	구비서류
공통 서류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보험금수취인의 신분증 사본 · 보험금 청구권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화재사실확인원(경찰서), 화재증명원(소방서) · 수리 및 재조달 견적서, 영수증(수리업체, 재건축업체, 구입업체)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 관리대장 · 임대차 계약서
기계	· 기계 관리대장 · 감정평가서(질권물건) · 리스계약서(리스물건)
시설/ 집기 비품	· 시설 및 집기비품 관리대장 · 시설 개보수 확인서류
가재 도구	· 주민등록등본 · 가재도구 명세서
동산	· 재고 및 손해명세서 · 수불대장 ·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중기	· 중기등록원부(사본) · 수입면장(수입품) · 운전면허증 양면 사본 · 리스계약서(리스물건) · 임대차 계약서 · 도급 계약서

■ 골프사고

-		
구분	구비서류	
공통 서류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피보험자/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상해 사고	· 상해사고 구비서류와 동일	
홀인 원	· 홀인원 증서(골프장 발급) · 홀인원 확인서(동반경기자 2인, 동반캐디) · 스코어카드 사본 ·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지출 명세서	
골프 용품 파손	· 사고경위서(본인, 제3자, 골프시설관리자) · 파손용품 사진 · 수리영수증 또는 견적서(수리불가시 수리업체의 수리불가 소견서와 파손된 골프채 송부) · 골프용품 구입영수증	
골프 용품 도난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골프용품 구입영수증	

■ 도난사고

구분	구비서류		
공통 서류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보험금수취인의 신분증 사본 · 보험금청구권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도난사고접수 확인원(경찰서)		

구분	구비서류	
현금 도난	· 시재내역(현금시재표) · 거래원장 · 거래영수증	
물품 도난	· 최초구입영수증 · 신품견적서 · 자산대장	
상품 권/ 유가 증권 도난	· 시재내역(현금시재표) · 거래원장 · 거래영수증 · 도난된 유가증권의 번호가 기재된 신문 공시문 · 제권판결문, 제권판결에 소요된 비용 영수증	

■ 배상사고

구분	구비서류	
공통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피보험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중복보험 확인용도) 및 등재인 각각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험금청구권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피해자(또는 피해물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사고경위서-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구분		구비서류
대인	치 료 비	· 피해자 신분증 사본 · 진단서 또는 초진차트(진단명 명시)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입퇴원확인서(입원시) ·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법정전염병 또는 중환자로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지급) · 개호소견서 · 향후 치료비 추정서(치료 현재시점 이후에 지속적 가료를 요하는 경우)
	휴 접 쇤 픎	· 피해자 소득 입증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3개월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대 인	하 야 정 증	· 후유장해 진단서(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사 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첨부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구분		구비서류		
대물	0세 0뒤	· 피해물 내역서 및 피해입증서류(수리비견적서 또는 수리불가시 수리불가 확인서, 영수증 등) · 현장사진 · 피해물 파손사진 및 수리사진 · 피해물의 등록증(차량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등)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국과수 등)에 접수된 경우 사고사실확인서		
	大 哉 鬯 の 大 口 iii	· 차량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가해자의 재직증명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유류대 영수증		

※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kbinsur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방카슈랑스콜센터(☎1544-0116)를 참고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



※ 보험업감독규정 중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 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 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 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 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 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 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해당 금융회사 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 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신 청 방 법

● 전화 : ☎ 1544-0116 (지역번호 없이)

● 서면 : 135-5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 홈페이지 : http://www.kbinsure.co.kr

[인터넷창구 > 고객정보변경 > 개

인정보활용동의철회]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

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 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 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 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 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해당 금 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 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 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 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 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 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코리아크레딧뷰로㈜ : **☎** 02)708-1000

인터넷 www.koreacb.com

· NICE평가정보㈜ : ☎ 02)2122-4000

인터넷 www.nice.co.kr

※ KB손해보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문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사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	(02)6900-2114	(02) 3702–8500	(국번없이) 1332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7 KB손해보험빌딩 정보보호파트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불만사항 등이 있을 경우 당사 방카슈랑스콜센터[☎ 1544-0116]로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고객정보 취급방침

KB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도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

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5.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 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은 KB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 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 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 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 였습니다.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신 용정보
- 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증권 총액정보등(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 참조)

Ⅱ. 고객정보의 제공처

KB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KB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KB국민은행(은행 및 외국환업), KB증권(금융투자업), KB라이프생명(산명보험업), KB자산운용(집합투자업,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KB캐피탈(리스,할부금융업), KB보통산신탁(신탁업), KB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 KB인베스트먼트(투자 및 융자업), KB데이타시스템(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KB신용정보(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입니다.

Ⅲ.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KB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 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 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 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 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 였습니다.

-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 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 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 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 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등 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 ⑦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연1회 이상 통지하는 등 고객의 자기정 보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 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 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 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B금융그룹

KB금융지주	고객정보 관리인	KB국민은행	고객정보 관리인
KB증권	고객정보 관리인	KB손해보험	고객정보 관리인
KB국민카드	고객정보 관리인	KB 라이프생명	고객정보 관리인
KB자산운용	고객정보 관리인	KB캐피탈	고객정보 관리인
KB 부동산신탁	고객정보 관리인	KB저축은행	고객정보 관리인
(B) 인베스트먼트	고객정보 관리인	KB 데이타시스템	고객정보 관리인
KB신용정보	고객정보 관리인		

보통약관

제 1 절 일반조항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 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 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기환급금 지급시기에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 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및 보상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 니다.
장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항을 말합니다.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를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대상 질병(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상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질병·사인분류에 따라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질병·사인분류에 따라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상병)에 대한 보험니다. 지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상병)에 대한 보험금지급여부가판단된경우,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변경되더라도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상병)분류가변경되더라도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상병)분류가변경되더라도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상병)분류가변경되더라도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상병)분류가변경되더라도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상병)분류가병경되더라도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상병)분류가

부 가 설 명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체계

질병의 원인과 증상 두 가지 모두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하는 진단을 위해 아래 두 가지 분류부호가 사용됩니 다. 또한 원인과 질환에 따라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 니다.

- 검표(+) :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 별표(*) : 원인(검표)으로 인한 발현증세에 대한 질

병분류코드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110원 + (110원 × 10%) = 121원
평균공 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약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
환급금	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 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관 련 법 규 (대통령령 제3193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 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 의 공휴일로 한다.

-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2005. 6. 30>
-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 련 법 규 (대통령령 제3193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 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 치는 경우
 -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 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 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 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한다.
-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절, 제3절, 제4절 내지 제5절의 보장을 따릅니다.

제4조(보장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 (【별표1】(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이하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의 경우는 제3 절 "3-3.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및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7항을 따릅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납입기간 중에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 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 회사는 납입면제 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검사결과, 진료기록부 등 증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게 된경우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 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절, 제3절, 제4절 내지 제5절의 보장을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용 어 풀 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에 등의 심신장에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 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 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 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 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 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 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 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용 어 풀 이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은 이 약관의 「분쟁의 조정」 조항에 따르며 분쟁조정 신청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 어 풀 이 가지급보험금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따라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2】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1]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참조)에 따릅니다.
- ④ 1종(050플랜(금리고정형))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부터 이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적립부분 적용이율을 연단위복리로 적립한 금액(적립한 금액에서 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5 2종(실속플랜(금리연동형)), 3종(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 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부터 이 보험의 "보장성-1701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적립한 금액(적립한 금액에서 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용 어 풀 이

·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 한 보험료

· 보험료납입일 : 보험료가 회사에 입금된 날

- ⑥ 제5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 율을 적용합니다.
 - 1.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 정 적용합니다.
 - 2. 회사는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 정률을 적용하여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3.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 리 0.2%를 적용합니다.
 - 4. 세부적인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

서 별도로 정한 "보장성-1701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지 침"을 따릅니다.

- ① 회사는 제5항 및 제6항의 "보장성-1701 공시이율" 및 산출 방법 등을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매월 공시합니다.
- 图 계약자가 제37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 출시 인출금액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 시점까지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용어풀이

·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 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2%일 경우), 적립액은 공시이 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2%)로 적립됩니다.

·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부지표금리

사업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 회사 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및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운용자산이익률

사업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

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 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 시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경우

예) 보험금: 6천만원, 보험금 지급일자: 2022년 4월 10일 일때 보험금을 일시에 받지않고 3년 동안 매년 동일 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지급일	지급 금액
2022년 4월 10일	2천만원
2023년 4월 10일	2천만원 X (1+ 평균공시이율)
2024년 4월 10일	2천만원 X (1+ 평균공시이율) ²

※ 평균공시이율이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보험상품자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주소변경통지)

- □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I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용 어 풀 이 |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이 되는자를 말합니다.

※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4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예 시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 연대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 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 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수 있습니다.

관 련 법 규 상법

- ㆍ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한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2(병원등)의 규 정에 의한 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 원, 한방병원(또는 요양병원)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부 가 설 명 직업 또는 직무

- 직업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합니다.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말합니다.

-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 으로 변경 등
-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 자로 변경 등
-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 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 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 가 설 명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 위험보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 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 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예 시 비례 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 급 → 2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망 가입금액: 1억원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2급 0.5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5) = 6천만원

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관련 예시: A씨(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 으로 근무하던 중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물 품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물품 배 달 업무 중 일반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게 지 급되었습니다.

용 어 풀 이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 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 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 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 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 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 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약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
- 5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 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图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보장)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질병이 있다고 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 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병 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 지사항이 청약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 어 풀 이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 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 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 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 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 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 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 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 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 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 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제5항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 된 경우
- 7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图 이 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용 어 풀 이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 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 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 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20조(청약의 철회)

-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2.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3.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관 련 법 규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 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 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 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 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 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 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 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

자로 본다. 가. 국가

- 나.「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 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용 어 풀 이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 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5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 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보장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 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자필서명에는 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5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 어 풀 이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지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 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합니다.

용 어 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등에 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
-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기한·행사방법·효과 등)
-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 급제한 조건
- ·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포함)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관 련 법 규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제22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 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 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 어 풀 이

•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보험자
-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적립보험료를 포함합니다)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계약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 가 설 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 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 경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 [5]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최초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 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 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7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图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감액 또는 증액시 환급금이 없 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환급금보다 적거나 많 아질 수 있습니다.

용 어 풀 이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금액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감액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 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적립 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제24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 이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 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신분증 "이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을 말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험금 및 보험료를 변경할 때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 로 납입하거나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보험나이 계산

생년월일 : 1992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2년 4월 13일

⇒ 2022년 4월 13일 - 1992년 10월 2일 = 29년 6월 11 일 = 30세

· 계약해당일 계산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 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일: 2022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10월 1일 계약일: 2024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2월 말일

제25조(계약의 소멸)

-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적립한 금액에서 중도인출액 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의 금액)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보장의 소멸에 대한 계약자적립액 등의 환급은 제2절, 제3절, 제4절, 제5절의 보장을 따릅니다.

부 가 설 명 사망에 관한 세부규정

- 이 보험에서 정하는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 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 가 설 명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 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 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 고를 하여야 합니다.
-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 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 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용 어 풀 이 미경과보험료

미경과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료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사업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보험료를 할인 한 경우 할인금액은 차감합니다.

예) 1년치 보험료(연납)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 다면, 6개월(미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미경과보험료라고 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 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용 어 풀 이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 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 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 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 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용 어 풀 이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험계약

- 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 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용 어 풀 이 지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 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 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 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 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 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5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 어 풀 이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

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 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 율로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알릴 의무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용 어 풀 이 부활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 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5]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ㆍ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ㆍ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22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의1(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 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5조 (해약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용 어 풀 이 위법계약

위법계약이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 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 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 을 말합니다.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 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참조)에 따릅니다.
- ③ 계약자가 제37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 출시 인출금액 및 해약환급금의 지급 시점까지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 공하여 드립니다.
- 5 제32조의1(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6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 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 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중도인출)

-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적립한 금액에서 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합니다)의 8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은 보험기간 내에 한하며,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중도인출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을 한번도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 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용 어 풀 이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로부터 다음 해의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시) 보험계약일이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 기준 매 1년은 해당년도 8월 15일부터 다음 해 8월 14일 까지입니다.

예 시 중도인출금의 한도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 의해 산출된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 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80% = 80만원
- ⇒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 합계 를 10만원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만원 = 70만원

제38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제39조(적용대상)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40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1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 39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 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 본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42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 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3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절차)

- □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2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39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 (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제44조(분쟁의 조정)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 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

- 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4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 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부 가 설 명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2년 9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5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7조(약관의 해석)

-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 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용 어 풀 이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함은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민법」제2조 제1항)

관 련 법 규 |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항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4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 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 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 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 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용 어 풀 이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 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 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 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 어 풀 이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50조(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

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회사는 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관 련 법 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2항

회사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5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 어 풀 이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 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 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보험계약 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 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절 1종(ŒO플랜(금리고정형)) 보장

2-1.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20~100%)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1.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20~100% 장 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보험 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 가 설 명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 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 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관 련 법 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 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 고를 하여야 합니다.
-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 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 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5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7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图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이미 이 보장에서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 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일 반상해후유장해(20~100%)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 해에 대한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보험금이 지급된 것 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일반상해후유장 해(20~100%)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예 시 장해지급률 계산

- ① 보험가입 전 한 다리의 관절에 약간의 장해(지급률 5%)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다리의 해당관절이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 률 30%)
 - ⇒ 보험가입 후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30%)에서 보 험가입 전 장해지급률(5%)을 차감한 지급률 25% (=30%-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 ② 보험가입 후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지급률15%)인 상태에서 이후 상해로 그 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가 된 경우(지급률 35%)
 - ⇒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차감한 지급률 20%(=35%-1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일반상해후유장 해(20~100%)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III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과 일반상해후 유장해(20~100%)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제3조(보장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일반상해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 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제3절 2종(실속플랜(금리연동형)) 보장

3-1. 일반상해사망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 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 가 설 명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관 련 법 규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 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 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장의 소멸)

- □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일반상해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 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3-2.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 표(【별표1】(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

- 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 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 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이미 이 보장에서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 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일 반상해후유장해(20~100%)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 해에 대한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보험금이 지급된 것 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일반상해후유장 해(20~100%)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예 시 장해지급률 계산

- ① 보험가입 전 한 다리의 관절에 약간의 장해(지급률 5%)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다리의 해당관절이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 률 30%)
 - ⇒ 보험가입 후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30%)에서 보 험가입 전 장해지급률(5%)을 차감한 지급률 25% (=30%-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 ② 보험가입 후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지급률15%)인 상태에서 이후 상해로 그 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가 된 경우(지급률 35%)
 - ⇒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차감한 지급률 20%(=35%-1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 图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일반상해후유장 해(20~100%)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3-3.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 표(【별표1】(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80% 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일반상해80%이상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 지급받은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이미 이 보장에서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 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일반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 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장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80% 이상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3-4.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 표(【별표1】(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50% 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

- 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 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일반상해50%이상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 지급받은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이미 이 보장에서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장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50% 이상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제4절 3종(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 보장

4-1.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일반상해사망가 족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일반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년간 확정지급(120회)

예 시 모험가입금액 10만원				
		가입금액 등 표기		
총지급금액	지급기준	가입 금액	1회 지급액	
			시비곡	
1,200만원	보험가입금액 × 120회	10만원	10만원	

-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 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 가 설 명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 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 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관 련 법 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 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 를 하여야 합니다.
-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 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 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장의 소멸)

-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4-2.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일반상해80% 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년간 확정지급(120회)

예 시 보험가입금액 10만원				
총지급금액	급금액 지급기준		가입금액 등 표기 가입 1회 금액 지급액	
1,200만원	보험가입금액 × 120회		10만원	

-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장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80%이 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이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4-3.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일반상해50% 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년간 확정지급(120회)

예시	보험가입금액 10만원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표기
총지급금액			1회 지급액
		금액	시비그
1,200만원	보험가입금액 × 120회	10만원	10만원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장의 소멸)

-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50%이 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이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4-4. 일반상해후유장해(20~79%)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 표(【별표1】(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20~7%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후유장해(20~7%)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일반상해후유장해 (20~79%)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일반상해후유장해(20~79%)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일반상해후유장해(20~79%)보험금에서이미 지급받은 일반상해후유장해(20~79%)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기 이미 이 보장에서 일반상해후유장해(20~79%)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 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일

반상해후유장해(20~79%)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일반상해후유장해(20~79%)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일반상해후유장해(20~79%)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예 시 장해지급률 계산

- ① 보험가입 전 한 다리의 관절에 약간의 장해(지급률 5%)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다리의 해당관절이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 률 30%)
 - ⇒ 보험가입 후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30%)에서 보험가입 전 장해지급률(5%)을 차감한 지급률 25% (=30%-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 ② 보험가입 후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지급률15%)인 상태에서 이후 상해로 그 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가 된 경우(지급률 35%)
 - ⇒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차감한 지급률 20%(=35%-1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 图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일반상해후유장 해(20~79%)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4-5. 상해수술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보험수 익자에게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수술비는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보장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 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 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 腔鏡檢查) 등)
-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 ④ 제1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 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 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 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 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

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 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 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 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제도성 특별약관

1.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 및 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일반조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④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 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 회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 다)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거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

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퍼스널모빌리티(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 차 등)는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 통법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 ③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 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변경시 변경된 내용 을 적용합니다.
- 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 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 등으로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 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보험계약과 동시에 이 특별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

2. 보험료 자동난입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 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 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 중 계약자가 희망 하는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

제1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일반조항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2조(계약후의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제1조(적용범위)

- ① 이 특별약관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관 련 법 규 소득세법

-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 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 (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 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 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 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4(보험료의 세액공 제)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공제로서 보 험, 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 공제료 납입영수 증에 장애인전용 보험, 공제로 표시된 보험, 공제의 보험료, 공제료를 말한다.
- ②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보증, 공제의 보험

- 료, 보증료, 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생명보험
- 2. 상해보험
- 3. 화재,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 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하다.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 의 범위)
-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 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 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 애인인 보험

관 련 법 규 소득세법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 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 증환자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 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 는 사람을 말한다.

예 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 ·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 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 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 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 이 필요합니다.
-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 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

- 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장 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 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④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 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장애인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 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 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 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예 시 |특별세액공제 대상 기간 예시

2022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2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기 전(2022년 1월 15일~ 2022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해당 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22년6월1일~2022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22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해당 연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단, 제2조(제출서류)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예 시 특별세액공제 대상 기간 예시

2022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2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22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해당 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별약관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단,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4.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환급금 제도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충족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만기유지환급금을 적용합니다.
 - 1. 보험계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호의 "순수보 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인 경우
 - 계약체결시점에 산출한 보험계약의 "예상만기환급금" 이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3. 보험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유지된 보험계약
- ③ 제2항 제2호의 "예상만기환급금"은 계약체결시점의 적립 보험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납입해당일에 정상납 입하는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이 보험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 (단, 금리고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④ 제2항 제2호의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는 계약체결시점의 적립보험료를 기준으로 적립보험료의 납입기간과 납입주 기를 곱한 적립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⑤ 계약을 체결할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 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적립보험료는 태아 보장기간이 끝난 이후의

제2조("만기유지환급금"의 정의 및 지급)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만기유지환급금"이라 함은 총 납입한 적 립보험료에 1원을 더한 금액에서 이 보험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로 적립한 예상만기환급금"과 "적립부분 공시이 율로 적립한 예상만기환급금"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금리고정형 상품의 경우 보장부분 적용이율 및 적립부분 공시이율은 적립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예상만기환급금은 실제 납입한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③ "만기유지환급금"이 0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만기유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만기유지환급금"이 0원보다 큰 경우 일의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한 만기유지환급금을 이 보험계약의 만기환급금에 더하여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합니다.

예 시 만기유지환급금 지급예시

- ·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적립보험료 1만원인 보험계약
 - 총납입에상적립보험료 = 120만원(1만원 x 10년 x 12개월)
 - 예상만기환급금 사례별 만기유지환급금

(예시1) 예상만기환급금(보장부분 적용이율 적용) = 130만원

- :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120만원) < 예상만기 환급금(보장부분 적용이율 적용)(130만원)
 - → 만기환급금 금액과 상관없이 만기유지 환급금 적용계약 아님
 - → 만기유지환급금 = 0

(예시2) 예상만기횐급금(보장부분 적용이율 적용) = 110만원 예상만기횐급금(적립부분 공시이율 적용) = 100만원

- :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120만원) > 예상만기 환급금(보장부분 적용이율 적용)(110만원)
 - →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
 - → 만기유지환급금 = 120만원 + 1원
 - Max[110만원, 100만원]
 - = 10만 1원
 - = 10만 10원(일의지리 올림)

예 시 만기유지환급금 지급예시

(예시3) 예상만기환급금(보장부분 적용이율 적용) = 110만원 예상만기환급금(적립부분 공사이율 적용) = 130만원

> :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120만원) > 예상만기 환급금(보장부분 적용이율 적용)(110만원)

- →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
- → 만기유지환급금 = 120만원 + 1원 -Max[110만원, 130 만원]

= - 9만 9,999원 만기유지환급금이 0 원보다 작은 경우에 는 만기유지환급금 을 지급하지 않음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만기유지환급금은 "총납입 평균적립보험료"에 1원을 더한 금액에서 이 보험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로 적립한 평균적립 만기환급금"을 차감한 금액(0원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0원으로 하며, 0원보다큰 경우 일의자림에서 올림)을 한도로 합니다.
- [5] 제4항의 "총납입평균적립보험료"는 납입기간동한 납입한 " 평균적립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⑥ 제5항의 "평균적립보험료"는 납입방법에 따른 보험가입후 1년간 납입한 적립보험료의 평균보험료를 말합니다.
- 7 제4항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로 적립한 평균적립 만기환급 금"은 평균적립보험료로 산출한 평균적립순보험료를 이보험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단, 금리고정형의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만기유지환급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만기유지환급금"은 보험계약 종료시점에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만기유지환급금" 및 "만기유지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자 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 제2항의 각호에 해당 하는 유효한 계약이 보험기간중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납입한 적립보험료에 한하여 제2조("만기유지환 급금"의 정의 및 지급)를 적용합니다.

③ 이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만기유지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별표1

장해분류표

1 총칙

1. 장해의 정의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 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 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 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 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 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 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 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장해의 판정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 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 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 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 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 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 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 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 여야 한다.

2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 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 긴 때	5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 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상태를 포함한다.
 - 주1) 한전수동 : 불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 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주2) 안전수지: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 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 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 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 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 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 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 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 (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력검 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 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 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 하여야 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 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 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 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 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거시	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22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치료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병력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기능 장해 소견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 어야 하는 경우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 나는 경우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

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 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 가) 뇌영상검사(CT, MRI)
-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 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 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 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 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 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 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 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 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 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 래턱의 개구(입벌리기)운동, 삼킴(연하)운동 등 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이나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뚜렷한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 또는 뚜 렷한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

- 간 최대 개구(입벌리기)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 이 1.5cm이상인 경우
-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 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 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약간의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 또는 약 간의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 간 최대 개구(입벌리기)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 이 1cm이상인 경우
 -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 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 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 취가 불가능한 상태
- 5) 개구(입벌리기)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 (입벌리기)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 대 개구(입벌리기)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 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 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 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 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 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 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산·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 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 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 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 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 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 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 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 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 해로 평가한다.
-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 (흉터)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 습)을 말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 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 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 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 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4) 다발성 반흔(흉터)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반흔(흉터)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 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 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cm², 1/4 크기는 20cm²),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², 1/4 크기는 12cm²),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cm², 1/4 크기는 6cm²)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10

-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 를 동일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 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 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 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 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평가한다.
-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 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 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 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 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OI: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 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 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 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 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 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 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 이 40% 이상일 때
-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 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 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 1마디를 수술 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 정되는 경우
-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 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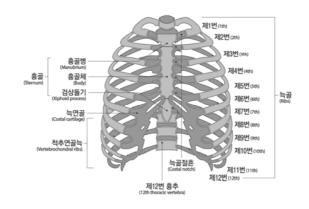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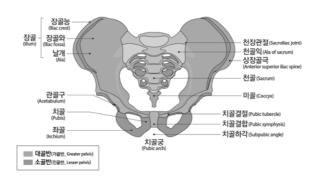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 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 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 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 정유합 상태
 -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를 통해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이상인 경우
 -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 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녹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녹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 가 설 명 가슴뼈



부 가 설 명 골반뼈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 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 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 (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 (완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 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 관절(완관절)로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 제1 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 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 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 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 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 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
 - 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 하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 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 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 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 우를 말한다.
-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 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 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 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 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 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 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 (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 (족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 관절로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 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 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 성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 제1 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 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 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 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 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 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 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 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 위의 1/2 이하로 제하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 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 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
 - 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 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 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 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 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 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 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 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 (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 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 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 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 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 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 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 (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지관절이라 한다.
-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 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 이라 부른다.
-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 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 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

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운 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 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 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정상운 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부 가 설 명

손가락



부 가 설 명

손가락



11. 발가락의 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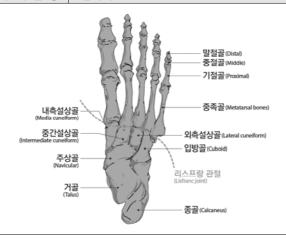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 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 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 (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 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 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 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 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

- 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 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 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6) '발가락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 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부 가 설 명 발가락



부 가 설 명 발가락





12. 흥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 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 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 실한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 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 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 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 으로 삽입한 경우
-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 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 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 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 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 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 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 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 한다.
-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5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100
8) 심한치매 : CDR척도 4점	80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나)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 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 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 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 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수상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 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 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 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 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 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② 적절한 음식섭취, ④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⑤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②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⑥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⑥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 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 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 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 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 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 기준'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 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한다.
-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를 말한다.
-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 하여 보상한다.
-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

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 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 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 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 가) '되전증(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 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 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 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 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 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 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 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 한다.
-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 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 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 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 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 암>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		
이동 동작	1)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40%	
	2)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 이 가능한 상태	30%	
	3)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 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4)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 나 보행시 파행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 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 지 못하는 상태	10%	
음식물 섭취	1)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 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2)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 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3)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4)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 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 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유형	제한 정도	지급률
배변 · 배뇨	1)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 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 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 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 도루, 장루상태	20%
	2)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 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 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 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 한 배뇨,배변 상태	15%
	3)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 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4)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 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 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목욕	1)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 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 한 상태	10%
	2)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 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 움이 필요한 상태	5%
	3)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 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옷 입고 벗기	1)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2)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 능한 상태	5%
	3)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 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적 립 기 간	적 립 이 율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장	60일이내 기간	가산이율(4.0%)		
보험금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 +		
	90일이내 기간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기간			
해약 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종 (금리 고정형)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 의 50% 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 의 40%	
		2/3종 (금리 연동형)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구 분	적 립 기 간 적 립 이 율				
만기 환급금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1종 (금리 고정형)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 의 50% 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 의 40%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지급사유가 알린 경우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	2/3종 (금리 연동형)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1종 (금리 고정형)	평균 공시이율	
		2/3종 (금리 연동형)	공시이율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 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단, 일반조항 제46조 (소멸시효)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 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 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일반조항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 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 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 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 아래의 법·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법규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 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 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 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 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17.7.26..2020.2.4.>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 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18.>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 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 "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 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2013.8.6.>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 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신설 2016.3.29. 2017. 7. 26..2020.2.4.>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 7, 26.,2020.2.4.>

법규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2.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2.2., 타법개정]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 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 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 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 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 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 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 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 시를 확인하는 방법
-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 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 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하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 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 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 다. <신설 2015.12.30., 2017.10.17.>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 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 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10.17.>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 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 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0, 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3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 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 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 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 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 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7조(적합성원칙)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 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적정성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 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설명의무)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 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보장성 상품
 -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4) 위험보장의 범위
 -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나. 투자성 상품
 -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 2) 투자에 따른 위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 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예금성 상품
 -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 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라. 대출성 상품
 -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 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

출성 상품의 내용

-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이자율 시기
-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 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 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 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제휴서비스등"이라 한 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내용
 - 나.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 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 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 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 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9.25.] 제19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 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 니 된다
 -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 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 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 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 우
 - 5.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 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 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9.25.] 제20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 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 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 한다.

-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 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 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일 : 2021.9.25.] 제21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46조(청약의 철회)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 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 약을 철회할 수 있다.
 -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 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재화 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 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 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 ·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 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
 -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자
 -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

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 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재화등, 이자 및 수수 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 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 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9.25.] 제46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 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 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 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 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9.25.] 제47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법규4

민법 [시행 2021.1.26.]

[법률 제17905호, 2021.1.26., 일부개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 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 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 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 1. 8촌 이내의 혈족
- 2. 4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법규5

상법 [시행 2020.12.29.]

[법률 제17764호, 2020.12.29., 일부개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 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 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3.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6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개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 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18.12.11., 2020.6.9.>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2020.2.4.>
-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

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20.2.4.>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 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11.>
-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 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1.,2020.2.4.>

-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 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 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에게 제공하는 경우
-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 공하는 경우
-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

- 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 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 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 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 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 적 연구를 포함한다.
-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를 수집한 경위
-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 는 영향
-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 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①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 나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5.3.11.>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 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신설 2015.3.11.>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 다. <개정 2015.3.11.>
-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① (생략)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2. 4.]

법규7

의료법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87호, 2020.12.29., 일부개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 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2016.5.29., 2019.4.23., 2020.3.4.>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 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이하 생략)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4.>
 -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 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 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 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 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 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 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 한다. <개정 2010.1.1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 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 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 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 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신설 2015.1.28.>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 ⑦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10.1.18., 2015.1.28.>

[본조신설 2009.1.30.]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 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 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 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개정 2012.2.1., 2020.3.4.>
-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 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2.2.1., 2019.8.27.>
-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 ④ 삭제 <2020.3.4.>
-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 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0.3.4.>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 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 (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 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 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 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 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 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 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2012.2.1.2019.8.27.>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 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 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 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 학사 학위를 받은 자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 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08.10.14.]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 서 각각 추천하는 자
 -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 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 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법규8 [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1.1.]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2021.10.14., 일부개 정]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 다. <개정 2015.7.7., 2017.1.6.> [전문개정 2011.12.15.]

[별표1] <개정 2021.8.27.>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	경	형	소형	즈춰	디윰
류	초소형	일반형		중형	대형
승용자동차	250시시 (전기자 동차의 경우 최	터·높이 2.0미터 이 하 인	이 1,600 시시 미 만이고, 길이 4.7 미 터 ·	배 기 량 이 1,600 시시 이 상 2,000 시시 이 · · · 중 하 나 이 비 이 는 도을 하 그도을 하 그로 하나 소 초 는	배 기 2,000 시 시 이 모형 그 것 그 한 그 것

종	경형			ᄌᆋ	미원
종 류	초소형	일반형	소형	중형	대형
승합자동차			승 차 정 원이 15 인 이하 이 고 , 길이 4.7 미 터 · 너비 1.7 미 터 · 높이 2.0 미터 이 하인 것	증원이 16 인 이상 35인 이 가 길 너 높 이 바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되었다. 의 바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되었다. 그 가 가 되었다. 그 가 되었다.	승 차 36 인 이상 이거나, 길이 나 보이 소호과 나 보이 소호과 하 길이가 9 미터 것
화물자동차	250시시	배기량이 1,000시 시 미만 이고, 길 이 3.6미 터 · 남이 1 · 높이 2.0미터 이 하 인 것	최 대 적 재량이 1 톤 이하 이 고 중 량 이 3.5 톤 이하 인 것	최 대 적 재량이 1 톤 호마 가 등 5 만 나 중 3 . 5 분 이 가 총 이 본 기가 본 기가 본 기가 본 기가 본 기가 본 기가 되었다.	최 대 적 재량이 5 톤 이상 이거나, 총 이 10톤 이 상 이 상 것

종	경형		ᆺᅯ	ᄌᇶ	디침
류	초소형	일반형	소형	중형	대형
특 수 자 동 차	배기량이 미만이고, 미터·너비 높이 2.0미 것	길이 3.6 11.6미터·	총 중 량 이 3.5 톤 이하 인 것	총 중 량 이 3.5 톤 초과 10톤 미 만인 것	총 중 량 이 10톤 이 상 인 것
이 륜 자 동 차	배기량이 : 만(최고정 로와트 이천	격출력 4킬	배 기 량 이 100 시시 이 하(최고 정 격 출 력 11킬 로 와 트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00 시시 초 과 260 시시 이 하(최고 정 11킬 로 와 트 로 와 트 인하) 인 것	이 260 시시(최 고 정 격 출력 15 킬 로 와 트) 를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 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승용 자동차	다목적 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 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 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 자동차인 것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 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화물 자동차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 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 인 것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 인 것		
특수 자동차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 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 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 용도용인 것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 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이륜 자동차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 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 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 상,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

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 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동차

-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 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 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 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 동차를 포함한다)
-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 차
-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 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 하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 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 · 너비 · 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 · 너비 · 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상법 시행령

법규9 [시행 2021.12.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타법개정]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 1.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 2.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 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 3.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 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 을 갖추어 작성될 것
- 4.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8. 10. 30.]

법규10

전자서명법 [시행 2021.6.10.] [법률 제17354호, 2020.6.9., 전부개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이하 생략)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법규11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0.4.7.] [법률 제17218호, 2020.4.7., 일부개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 3. "말기환자(末期患者)" 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하다.

제37조(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 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법규12 [시행 2022.1.1.] [고용노동부령 제342호. 2021.12.31., 일부개정]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 10.>
-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W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 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 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5.>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 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3. 28.. 2019. 10. 15.>
 -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 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보장 색인

(ㅂ)	
보험료 자동납입 1:	36
(^) 상해수술비 ······ 1	32
일반상해사망 1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1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1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1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 1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 1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 1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 1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 1	
(ㅈ) 장애인전용보험전환 ······ 138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환급금 제도 ····· 143	
(ㅊ)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1	37

MEMO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안내

- ① 금융기관보험대라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 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 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1332 인터넷: www.fss.or.kr

보험문의 및 가입안내 1544-0116

① 판매인전용 ② 보상 신청 ③ 계약상담 ④ 약관대출상담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역삼동) KB손해보험빌딩